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 - (3) 보험모집인의 권한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보험편)(이하 “개정 상법”이라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 전 상법”이라 합니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리걸업데이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보험모집인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제646조의2)

개정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보험 모집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상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보험회사에도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에서는 제646조의2를 신설하여,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러한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2. 보험대리상

보험대리상이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대리상은 내부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수령권, 보험증권교부권, 보험계약 관련 의사표시권·의사표시수령권을 부여하여 계약대리상을 원칙으로 삼되, 보험자와 보험대리상의 약정에 의해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는 중개대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646조의2 제2항 본문).

그러나 보험대리상이 계약대리상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중개대리상인지 여부는 제3자인 보험계약자가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보험자의 보험대리상에 대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보험자가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646조의2 제2항 단서).

이러한 개정 상법상의 보험대리상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기존 보험회사들이 보험대리점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대리권이 없고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대리상과 구별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개정 전 상법에는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보험설계사에게 계약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은 인정되지 않고, 보험증권교부권 및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수령권이 인정됩니다(개정 상법 제646조의2 제3항).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04 | E-Mail. leesh@shinkim.com |
| ● 백상미 변호사 | TEL. 02 316 4226 | E-Mail. smbaek@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